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2014.4.30)

자본시장법 제 89 조,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- 아 래 -

1. 공시사유 발생일: 2014년 4월 16일

2. 공시사항:

가: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

나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대상펀드: 아래 펀드

(단위:좌)

| 펀드명 | 협회표준코드 | 원본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A | KR5370AB7022 | 501,948,600 |
|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C | KR5370AB7048 | 307,704,352 |

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(주)
대표이사 이석재